

학생서비스센터운영규정

제정 2016. 3. 1.

개정 2017. 1.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생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학생들과의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학생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이에 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 ①센터는 교학본부내에 둔다.

②센터에는 센터장과 행정직원을 둔다. 다만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본 센터는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 정보제공 및 안내를 하며 취급 업무 항목은 업무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① 학생지도 및 학생 복지관련 업무, 학생자치활동 지원
- ② 제증명 발급
- ③ 학생증 발급
- ④ 정보제공 및 안내
- ⑤ 학생언론활동 지원 및 평가·개선
- ⑥ 기타 센터에 관련된 업무

제5조(업무처리협조) 센터의 업무처리 협조를 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본교의 정상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